

구미시의회-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 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보고의 건

의안 번호	
----------	--

제의연월일 : 2025. 7. 24.

제 의 자 : 의장

1. 보고이유

- 세계 각 도시 의회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구미시의회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구미시의 자매결연도시인 창사시의 의회기관(인민대표대회)과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간 의회 차원의 교류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의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양 도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4.08.20. : 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부주임일행 구미시의회 방문 및 환담
- '24.10.29. : 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에 구미시의회와의 교류의사 전달
- '24.10.30. : 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회신(구미시의회 실무책임급 인사의 창사시 방문을 통한 교류 협의 요청)
- '24.11.16. : 구미시의회 실무단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방문 및 논의 (우호교류 체결 의사 구두 확인)
- '24.11.28. : 구미시의회 '우호교류 협약체결 의향서' 공문 발송
- '25.03.24. :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협약체결 의사 확인 및 검토의견' 공문 회신
- '25.04.03. : 양 기관간 우호교류협약 체결내용(정기 교류) 최종합의
- '25. 04월~ : 양 기관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세부협의 중(계속)

3. 체결개요

- 대상기관 : 중국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 체결시기 : 2025년 9월(협의 중)
- 체결장소 : 창사시 인민대표대회(협의 중)
- 체결방법 : 각 의회기관장이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 날인
- 서명자 : 구미시의회(의장), 창사시 인민대표대회(주임)
- 체결내용
 -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 교류 활동 추진
 -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지방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전개를 통한 공동 번영 및 발전 도모

4. 향후계획

-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상호 방문 실시
- 양 도시의 대규모 축제(행사)시 방문단 초청 및 문화·체육 교류 추진

5. 기대효과

- 의회 국제 역량 강화 : 소속 의원의 국제적 시야 확대 및 글로벌 역량 증진
- 우호관계 증진 : 창사시 인민대표대회와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호 관계 공고화
- 도시위상 제고 : 중국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미시의회의 대외적 위상 및 인지도 향상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협약체결 등)

7. 협약서(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창사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우 호 교 류 협 약 서 (안)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창사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양 회”라고 한다)는 양 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양 도시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1. 양회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2. 양회는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지방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한다.
3. 양회는 양 도시간의 우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대표단이 상대 도시 방문시 각종 편의 제공에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며 서명한 날부터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의장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
창사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주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우호교류 협약 및 자매결연 협약을 거치기 전에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